

광주지방법원 2015. 1. 27 선고 2014가단185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동기

변론 종결2015. 1. 13.

판결 선고2015. 1. 27.

주 문

1. 원고에게, 광주 동구 F 대 538.9㎡ 중 별지 도면 표시,

가. 피고 B은 ㄴ, ㄷ, ㄹ, ㅅ', ㅈ', ㅊ',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8.1㎡²

(1)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

(2)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C은 ㄱ, ㄴ, ㅁ', ㄹ',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4.9㎡ 및 ㄷ', ㄴ 2, 72, ㅎ', ㅎ,

ㄱ', ㄴ', ㄷ'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바) 부분 15.5㎡²

(1) 각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

(2) 각 토지를 인도하고,

다. 피고 D은 ㅎ', ㅍ', ㅌ', ㄱ', ㅅ', ㅋ, ㅌ, ㅍ, ㅎ, ㅎ'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마) 부분 11.5㎡²

(1)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

(2) 토지를 인도하고,

라. 피고 E은 ㄹ, ㅁ, ㅊ', ㅅ', ㅈ', 근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(라) 부분 4.1m²

(1)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

(2)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광주 동구 F 대 538.9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, 피고들 소유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넘어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각 점유하고 있는데, 그 내용은 아래 표 및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.

B	광주 동구 G 대 134.2m ² 및 지상 2층 건물	1층 : H약국 2층 : B 신경정신과	주문 제1의 가항의(다) 부분	8.1
C	I 대 24.2m ² 및 I 외 1필지 지상 건물	J, K공인중개사, L인쇄사 등	주문 제1의 나항의 (나) 부분	4.9
M대 395.8m ² 및 지상 단층 건물	N	주문 제1의 나항의(바) 부분	15.5	
D	○ 대 212.7m ² 및 지상 단층 건물	주택	주문 제1의 다항의(마) 부분	11.5

B	광주 동구 G 대 134.2m ² 및 지상 2층 건물	1층 : H약국 2층 : B 신경정신과	주문 제1의 가항의(다) 부분	8.1
E	P대 135.9m ² 및 지상 2층 건물	1층 : Q, R사진관 2층 : 주택	주문 제1의 라항의(라) 부분	4.1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이하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, 감정인 S의 측량감정결과,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, 이 사건 토지 중, 피고 B은 (다) 부분, 피고 C은 (나) 부분 및 (바) 부분, 피고 D은 (마) 부분, 피고 E은 (라) 부분 각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각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미미한 반면, 피고들로서는 20년 이상 이용하였던 피고들 소유 건물을 철거하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.

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,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.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5397 판결,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다115243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면적과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점유 면적, 이 사건 토지 현황,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이용계획,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을 제1

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인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성준

별지